

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(제11조 관련)

1. 목적

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,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 및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입검역물 중 반송 및 폐기(매몰 및 소각) 대상 품목에 대한 처리요령을 정하여 가축방역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

2. 불합격 검역물(이하 "불합격품"이라 한다)의 처리

가. 적용범위: 수입금지, 검역증미첨부, 검역불합격, 검역중단된 검역물 등

나. 불합격품의 관리

검역관(관리수의사, 보관관리인, 검역관리인 등)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접근·이동 금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다. 불합격품의 보관

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하여금 검역시행장 내에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불합격품을 보관하고 보관목록에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라. 불합격명령 불이행시 조치

법 제33조, 법 제38조, 법 제44조,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결과 불합격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가 반송·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.

3. 반송

가. 관세법령에 따른 보세구역(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검역시행장 제외)으로 반송

1) 반송이행계획서 제출

불합격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화주(대리인 포함)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송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가) 화주명(대리인 포함) 및 운송회사

나) 반송물품의 품명, 수량/중량

- 다) 반송예정일, 이동경로(경유지 포함)
- 라) 차량번호(운송자 연락처 등)
- 마) 도착지 보세구역(예: 부산 ○○장치장)
- 바) 관세법령에 의한 반송(수출)면장 사본

2) 조치사항

- 가) 반송이행계획서를 받은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안전하고 반송요건에 적합한 지 등을 판단하고 봉인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에게 해당 사항 확인 후 검역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.
- 나) 검역관은 반송이행계획서 및 불합격 사유 등이 포함된 반송처리 결과를 출발지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반송시 필요한 조치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.

3) 반송완료보고

- 화주는 도착지에서 불합격품을 선적하여 반송을 완료한 경우 선하증권, 반송면장 등 반송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반송완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나. 검역시행장으로서의 운송

1) 운송통보서의 발급

- 반송을 목적으로 다른 검역시행장에 불합격 검역물을 운송 할 경우 검역관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현물확인 후 제9조제1항의 별지 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(사무소 포함)에 통보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사후관리

- 검역시행장으로 불합격 검역물이 운송될 경우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 별도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보관목록을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본부(사무소)에 제출하여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다. 휴대검역물 및 우편물(특송화물 포함) 등의 반송

- 1) 제44조,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4. 폐기

가. 폐기장소

불합격품의 폐기(소각 또는 매몰)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실시한다.

나. 폐기방법

- 1) 불합격 검역물의 폐기 방법은 시행규칙 제25조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입회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그리고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등 화주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지역본부장이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불합격품인 경우에는 검역관 이외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. (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·폐기한 경우에 한함)
- 2)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은 불합격품의 폐기처분시 불합격품을 원상태 그대로 사진촬영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 또는 폐기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3) 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화주(대리인 포함)에게 별지 제13-1호 서식의 폐기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다. 폐기완료 보고

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폐기완료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휴대검역물, 우편물, 견본품 및 특급탁송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폐기확인서 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
- 2)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